

4) 학교현장실습 운영

- ①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고시 제6조 4항)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②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양성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선정**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 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실습 대상 인원 및 지원(협력)학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학교현장실습생을 수용하고,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장애학생 포함)을 위하여 교육실습 지원(협력)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장애학생 포함)을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의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모집에 협조한다.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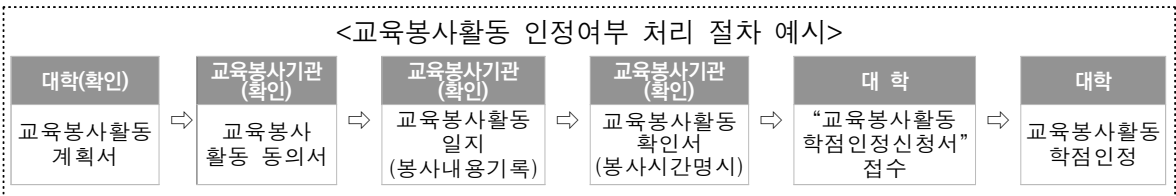
- ①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종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함
 -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 ②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㉞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㉟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㊱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1.10.27. 고시 개정)

(가능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유의사항)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

- ③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 ⑥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무시시험검정은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여부만을 확인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⑦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학점인정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되,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⑧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학점, 시간 등)를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6)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와의 협력

- ① 시·도교육청은 법령(「교원자격검정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원양성기관은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 ② 교원양성기관은 학교현장실습 시작 14일전 까지 실습 일정, 내용, 인원 등이 포함된 교육 실습계획을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와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